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8. 12.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 안 이 유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고 평창군의회의 심의, 확정을 받으려 하는 것임.

2. 주 요 골 자

가.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67,58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3,22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20백만원이 증액된 213,42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4,160백만원으로 기정예산의 변동이 없으며.

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지방세 18,136백만원, 세외수입 23,017백만원, 재정보전금 4,000백만원으로 기정대비 변동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952백만원이 증액된 108,799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은 2,268백만원이 증액된 59,473백만원임.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음.

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정책사업 169,994백만원으로 기정대비 3,22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34,308백만원, 재무활동 9,123백만원으로 기정대비 변동없음.
특별회계는 정책사업 50,049백만원, 행정운영경비 2,838백만원, 재무활동 1,273백만원으로 기정대비 변동없으나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려는 것임.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27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년도개시 50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년도개시 15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36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